

## 보험금 청구 시 유의사항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함.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청구 시 필요서류

- ①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자필서명)
  -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에서 다운로드 작성
- ② 사고증명서
-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④ 신분증 사본(앞면)
- ⑤ 통장 사본
- ⑥ 입퇴원/통원 진료비영수증(병원발급)
- ⑦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병원발급)
- ⑧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병원발급)
  - ※ 기타 필요서류 : 보험사에 문의



## 보험금 지급 절차(도형추가/아래 예시)



## 자주하는 질문

- Q. 보험가입과 탈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가입기간 내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및 재외동포 포함)은 자동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탈퇴됩니다.
- Q. 보험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A. 피해자(사망 시 법정상속인)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Q. 보험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한가요?**  
 A. 시민안전보험은 개인보험과는 별개로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여수시 자전거 보험, 영조물 배상공제 등 시에서 운영 중인 타 보험과도 중복 보장 가능합니다.
- Q. 사고 발생지가 여수인 경우만 청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사고 발생 이후 타 지자체로 전출한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한가요?**  
 A. 사고발생일 당시 여수시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전출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 1644-9666 ▶ 1번  
 여수시 콜센터 1899-2012  
 여수시민안전보험 검색

## 이런 보험도 있어요!

### 여수시 자전거(PM) 보험

공영자전거(여수랑), 개인 자전거, 개인 소유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자전거를 타던 중 생긴 사고 혹은 보행 중 자전거에 부딪혀 다쳤을 경우 신청 가능한 보험

- 가입대상**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별도절차 없이 자동가입)
- 보험기간** 2024. 2. 7. ~ 2025. 2. 6.(1년)
- 보장내용**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해, 자전거사고 배상책임, 입원일당 등 총 11개 항목 (최대 3,000만원 한도)
- 문의처** DB손해보험 ☎02-475-8115 / 여수시 주차차량과 ☎061-659-4567  
 인터넷 : "여수시 자전거보험" 검색

### 영조물 배상공제

여수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하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청 가능한 보험

- 가입시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시설, 공영주차장, 주민센터, 경로당, 공원, 체육 시설 등
- 보험기간** 2024. 1. 1. ~ 2024. 12. 31.(1년)
- 보장내용** 시설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피해 보상 (1인당 최고 3억원, 1사고당 최고 100억원 한도)
- 문의처** 시설물별 관리부서 / 여수시 콜센터 ☎1899-2012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2026 WORLD ISLAND EXHIBITION  
 YEOSU KOREA

# 2024 여수시민 안전보험



## 여수시민안전보험이란?

여수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를 전액 지급하여 예기치 못한 각종 재해, 재난 및 사고로 인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종합보험입니다.

## 보험 가입내용

- 보험계약자 : 여수시청
- 피보험자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및 재외동포 포함)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보장기간 : 2024. 3. 6. ~ 2025. 3. 5.(1년)  
 ※ 비탑승중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개 물림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성폭력범죄 위로금, 강력·폭력 범죄 상해비용 6개 항목은 2024. 6. 10.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지급 가능

## 보험 가입조건

- 여수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별도 신청 불필요(시에서 일괄 계약)
- 연령, 성별, 직업, 과거·현재 병력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가입가능
- 보험 가입 기간 중 전입자 포함(전출 시 자동 탈퇴)  
 ※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 보장 제외



## 보험 보장 내용

보장항목	가입연령	보장금액
자연 재해 사망 (일사·열사·한파 포함)	15세 이상	2천만원
폭발, 화재, 붕괴사고 상해 사망	15세 이상	2천만원
폭발, 화재, 붕괴사고 상해후유장애	제한 없음	2천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	15세 이상	2천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유장애	제한 없음	2천만원 한도
강도 상해 사망	15세 이상	2천만원
강도 상해유장애	제한 없음	2천만원 한도

보장항목	가입연령	보장금액
익사사고 사망	15세 이상	2천만원
농기계 상해사망	15세 이상	2천만원
농기계 상해후유장애	제한 없음	2천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2세 이하	2천만원 한도 (부상등급 1~14급)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65세 이상	2천만원 한도 (부상등급 1~14급)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15세 이상 80세 미만	300만원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제한 없음	10만원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15세 이상	2천만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15세 이상	2천만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애	제한 없음	2천만원 한도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제한 없음	10만원
비탑승중 교통상해 사망 ※ 6월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15세 이상	500만원
비탑승중 교통상해 후유장애 ※ 6월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제한 없음	500만원 한도
개 물림사고 사망 ※ 6월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15세 이상	2천만원
개 물림사고 후유장애 ※ 6월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제한 없음	2천만원 한도
성폭력범죄 위로금 ※ 6월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제한 없음	200만원 한도
강력 폭력 범죄 상해비용 (1개월 초과 의사 진단 시) ※ 6월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제한 없음	300만원 한도

## 항목별 보장범위

###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1항에서 규정한 재난에 따라 사망한 경우  
 ※ 사회재난은 정부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함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애)

- ▶ 운행중인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이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 1 여객수송용 항공기
- 2 여객수송용 지하철 / 전철 / 기차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포함)
-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터카 제외)
- 5 여객수송용 선박

### 익사사고 사망

- ▶ 수영 또는 다이빙 활동 중 혼수상태 및 사망에 이르는 사고
- ▶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혼수상태 및 사망에 이르는 사고  
 ※ 스쿠버다이빙, 수상보트 등 일부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제외  
 ※ 업무 도중 발생한 사고 등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경우 제외

###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제1급~제3급 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 일부감염병은 제외

### 개 물림사고(사망/후유장애/응급실 내원 진료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후유장애 또는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비탑승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애)

보행자가 보행 중 교통수단과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 보행자 : 보행 중인 사람, 휠체어 탑승자, 놀이기구(ex. 롤러스케이트) 이용자 등  
 ※ 교통수단 : 자동차, 이륜차, 자전거, 건설·농업기계(작업 중 사고는 제외) 등